

『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세(연평균 6.8%)를 보이는 홀로그램 기술 융합을 통해 지역 제조산업의 기술변화를 선도하고 산·학·연 기술교류를 통한 지역 산업 경쟁력을 확보
- 홀로그램 핵심기술을 활용한 제품·서비스 제작 및 실증을 위한 기술지원 등 전 주기 기업지원을 위한 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 거점 센터 구축 필요
- 이에 출연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0회계연도 구미시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출연개요

- 1) 출연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2) 출연금액 : 금2,850,000천원(도비 855,000천원, 시비 1,995,000천원)
※ 1차년도(' 20. 1월 ~ ' 20. 12월) 소요예산 중 지방비 매칭 금액
- 3) 사업내용 : 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

나. 주요사업

- 1) 사 업 명 : 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
- 2) 사업기간 : 2020년 1월 ~ 2021년 12월 (2년간)
- 3) 사업위치 : 구미대로 350-27 (금오테크노밸리 모바일융합기술센터)
- 4) 총사업비 : 50억원 [도비 15, 시비 35]

- 연도별 소요예산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사업비	연차별 투자계획				
		'19년	'20년	'21년	'22년	'23년
계	50		28.5	21.5		
국 비						
도 비	15		8.55	6.45		
시 비	35		19.95	15.05		

- 5) 추진주체 : 경상북도, 구미시
- 6) 주관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
- 7) 사업내용

- 홀로그램 제품·서비스 제작 및 실증을 위한 기술 지원 및 기업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홀로그램 상용화기술 지원 공간 조성
- 홀로그램 헤리티지·팩토리 실증 및 홀로그램 시스템·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관련 장비 구축
- 홀로그램 관련 제품 개발 기업들이 아이디어 발굴부터 제품 및 서비스를 제작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소주기 기업지원시스템 구축
- 홀로그램 헤리티지, 팩토리를 포함한 홀로그램 실증 제품·서비스 제작 가이드라인 및 이용 가이드라인 제작
- 홀로그램 품질표준 관련 장비구축, 관련 규제 및 제도 사전 허가 방안 수립

8)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

- 2015. 12 ~ 2016. 3 : 홀로그래프 융합기술 산업 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
- 2016. 8 ~ 2017. 9 : 홀로그래프 융합기술 상용화 육성사업 연구용역
- 2017. 5 : 글로벌 홀로그래프 산업 포럼 구미개최
- 2017. 12 : 홀로그래프 국회포럼(과기부, 경북도, 전북도 공동)
- 2017. 12 : 홀로그래프산업 발전 전략 수립(과기부)
- 2018. 12 : 홀로그래프 기술개발사업 기술성 평가 통과(과기부)
- 2019. 6 : 홀로그래프 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
- 2019. 11 : 홀로그래프 기술세미나 개최
- 2020. 7 : 홀로그래프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

다. 출연의 필요성

- 1) 홀로그래프 산업의 63% 차지하고 있는 산업용 홀로그래프 시장(측정/검사, 부품/소재, 의료기기)으로 관련기업 육성을 위한 상용화기술 지원 거점기관이 필요
- 2) 홀로그래프 관련 기업들의 아이디어 발굴부터 전문가 멘토링 및 컨설팅, 요소기술지원, 장비기반 개발지원 등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홀로그래프 관련 제품을 제작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전주기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필요
- 3) 홀로그래프 핵심기술 연구기관과 기업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홀로그래프 기술 중심의 다양한 상용화 제품과 콘텐츠 및 서비스 연결을 통해 新시장을 창출하고 홀로그래프 기술을 접목한 산업구조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제고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, 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 제3조,
「과학기술기본법」 제16조의3,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1조, 제19조
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~제19조,
제21조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
「구미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」 제5조, 제9조, 제10조,
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
- 예산조치 : 2020년도 예산편성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홀로그램 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」은,
 - 홀로그램 제품·서비스 제작 및 실증을 위한 기술 지원 및 기업의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홀로그램 상용화기술 지원 센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, 홀로그램 기술의 융·복합을 통한 기존 산업의 신규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됨.